

특수 교육에 관한 설명서

뉴욕 시 특수 교육과 관련된 공정한 공청회

공정한 공청회란 무엇을 말하나?

공정한 공청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신청”)란 재판과 비슷하나,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행정상의 공청회를 말한다. 본인과 뉴욕 시 교육국 (DOE) 사이에 특수 교육에 관련된 문제로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공청회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¹

일반 재판처럼, 공청회에서는 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공청회 담당자 (IHO)의 결정에 따른다. 지정된 시간내에 뉴욕 주에 있는 소송건에 대한 재 검토를 담당하는 사무실 (SRO)에 어느 한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는 한 IHO가 내린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되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SRO에 항소하기 위한 설명서를 잘 검토해 보길 바란다.

공정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담당자 (IHO)란?

이 담당자는 소송 사건에 관련된 규정과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임무에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직원들은 뉴욕 주에서 교육 받고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직원들은 뉴욕 시나 주에 속한 고용인들이 아니며 특수 교육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히 교육 받는 사람들이다.

뉴욕 시 교육국 (DOE)에서는 공청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이 사무실에서 공청회를 담당할 직원 (IHO)도 임명 하지만, 이 직원은 독자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 교육국에서 고용한 직원이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고용인이 아니다.

¹이런 제도 안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 분쟁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이며 행정적인 공청회 대신, 혹은 그것과 관련하여 아이를 위한 특수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위한 방법으로 부모는 회의나 중재를 요구 할 수가 있다.

언제 공청회/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신청을 요구 해야 하나?

주 나 연방 정부의 특수 교육에 관한 법에 따라 부모/보호자 혹은 학군에서는 다음 사항에 필요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검증, 평가 에 대하여, 혹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배치한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

공청회는 다음 사항에 필요하여 개최 할 수도 있다:

-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 혹은 그런 학생에게 필요한 공공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규정에 관하여;
- 학생에 알맞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IEP)에 나와있는 서비스나 시설에 관련된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리고 장애는 있으나 IEP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서 504항 시설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할 것) 아이들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시설들을 요구할 때;
- 교육에 관한 문제들.

공청회를 요구하는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나?

본인과 교육국 (DOE)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일어난지 2년 이내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특수 교육에 관한 규정과 이렇게 제한 하는 것이 개별적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뉴욕 주 교육국에서 발행한 절차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 봐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웹사이트

<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policy/psgncover.htm#notice> 에서 스페인어나 영어로 알 수 있으며 주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 (718)722-4544로 전화 할 수 있다. 교육국 (DOE)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제공 하기도 한다.

어떻게 공청회 신청을 해야 하나?

공청회를 요구 하기 위해, 신청 양식을 작성하거나 서신을 보낼 수가 있다. 이런 “소송에 대한 신청” 혹은 “공청회를 신청하는 것”은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그 결과 교육국 (DOE)에 분쟁이 발생 했다고 알려주고 공청회에서 당사자간 사이에 토론할 문제들을 미리 준비 할 수 있다. 양식을 작성하거나 서신을 보내는 등 어떤식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바라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서라도 준비해야 한다.

공청회 신청서를 교육국에 있는 공청회 사무실에 보내야 한다. 공청회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청은 하는데 다음 사항들을 꼭 포함하여야 한다:

- 학생 이름
- 학생의 집 주소
-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
-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
- 해결 하고자 하는 방법

서신으로 보낼 때 가능하면 철저히 자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 절차상 제기하지 않은 문제들은 공청회에서는 토론할 수가 없다. 교육국 (DOE)에서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10개의 다른 언어 (첨부했음)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http://schools.nyc.gov/Offices/EnterpriseOperations/ChiefFinancialOfficer/DFO/ImpartialHearingOffice/Parents/Multilingual+Request+for+Due+Process+Proceeding+Forms.htm>.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신청서를 어디에 보내야 하나?

양식이나 서신을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Impartial Hearing Office
131 Livingston Street, Room 201
Brooklyn, NY 11201
Attn: Request for Impartial Hearing
Fax: (718)935-2528/2932
E-mail: ihquest@schools.nyc.gov

교육국 (DOE)의 공청회 사무실에 서신을 보내는 것 이외에 아이가 다니는 학군에 있는 특수 교육 위원회와 뉴욕 주 교육국에 이 신청서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Impartial Hearing Reporting System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Vocational and Educational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Room 1624
One Commerce Plaza
Albany, NY 12234.

추가로, 서신을 발송했다는 증거물로 기록을 위하여 신청서 사본을 보관하여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배달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공청회 진행 과정

일단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면, 공청회 사무실과 교육국 (DOE) 두 곳으로 부터 답신을 받을 것이다.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일단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하면 뉴욕 주 규정에 따라 전체의 진행 과정에 필요한 시간표를 정해준다. 절차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에 이런 시간표에 관한 것이 적혀있다. 공청회 사무실에서 소송 사건이 진행 되는 동안 본인에게 이런 시간표에 관하여 알려 준다.

첫번째로 공청회 사무실에서 공청회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는 내용을 알려 준다. 이것은 공청회 사무실과 교육국 (DOE)에 사건을 의뢰 했다는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다.

타협할 수 있는 기간

공청회 신청서가 접수 되고 사무실에서 인정하고 난 후 30일 간 이내에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공청회 사무실에서 보내온 서류를 잘 검토하고 절차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읽어 보며 이런 진행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나, 그러나 주된 내용들을 아래에 적어 놓았다:

- **답변:** 공청회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육국 (DOE)에서는 답변을 해야하는 서류를 보내주며 공청회 신청서에 나타난 소송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답변이어야 한다. 종종 교육국 (DOE)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필요한 답변”으로 부른다. 이 서류는 보통 답변 양식이나 본질적인 사건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인다. 법적인 서류보다는 일종의 체크 리스트 처럼 보인다.
- **소송 하기에는 불 충분하다고 요구:** 공청회 신청서에 위에 설명한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서류가 혼란스럽거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서는 짧은 시간내에 소송 내용이 불 충분하므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공청회 사무실에 알려 소송 하기에는 불 충분하다고 요구 할 수가 있다. 며칠 후, 공청회 사무실은 신청서가 필요한 조건에 부합 하는지, 소송을 기각할 건지, 혹은 이 사건을 그대로 소송으로 가져 갈 건지 결정을 내린다. 만일 청원사항이 기각되면,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적어 재 접수 시킬 수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시간 표가 다시 만들어 진다.
- **타협 할 수 있는 시간:** 소송건이 시작된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공청회가 시작 하기전 공청회를 신청한 이유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과 교육국 (DOE) 담당자 사이에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부르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교육국 (DOE)에서 이런 모임을 준비 하여야 한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모임은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업료 환불이나 수상이나 개인에 관련된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공청회를 통하여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시간에 변호사를 동석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교육국 (DOE)에서도 이 기간에는 변호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있다. 만일 본인과 교육국 (DOE) 사이에 이런 타협 시간이 필요 없다고 동의 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이런 타협 시간이 필요 없게 된다. 만일 본인과 교육국 (DOE)이 동의 한다면 타협 시간 대신에 조정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 **타협을 통한 합의:** 타협 시간 동안에 교육국 (DOE)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자세한 합의 내용에 서명을 한다. 서명한 후 3일 이내에 각 상대방은 합의 내용을 취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한 후에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만일 단지 몇가지 문제에서만 합의에 이를 경우 **부분적인 타협에 대한 합의**만 집행할 수 있고 아직도 분쟁하고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공청회에서 다룬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단지 부분적으로 합의 했을 경우, 공청회 담당자는 공청회를 위한 날짜를 정해 준다.

공청회 진행 절차

공청회에 관하여 담당자로 부터 지시 사항을 받게 된다. 이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잘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환장 양식을 사용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시간 제한이 있다. 공청회장에 오기 위해서, 통역사나 다른 특별한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런 도움에 필요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청회 준비.** 공청회 사무실에서 보내온 서류봉치를 철저히 잘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료들을 받지 못 했으면, 공청회 사무실에 즉시 전화하여 요구하여라. 소환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공청회 사무실에서 승인한 서류나 증인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들), 공청회장에 오기 위해서나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요구를 어떻게 하는지 서류상에 적혀있다.
- **증거.** 공청회 사무실에서 보내온 서류 봉치에는 증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 되어 있으며, 그러한 증거는 사건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공청회 시작하기 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주장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공청회 기간 중 진술을 말할 수 있게 한다. 공청회에 제출 하려는 서류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날짜 최소한 5일 전에 교육국 (DOE)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국 (DOE)에서도 공청회 기간 중 사용할 모든 서류들을 미리 제출하여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서류들을 공청회 시작 최소 5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공청회 사무실에서는 그런 증거들을 공청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어떤 서류들을 알려주고 보여줄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첫번째 페이지에 모든 서류들을 각각 목록하여 만들어 나열한 후 첨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에 페이지 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런 서류들을 2장씩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한 장은 공청회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다른 한 장은 공청회 시작 할 때 공청회 담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 **공청회 시작 전 회의.** 소송으로 제기된 문제가 맞는 지 확실하게 하고, 공청회에서 제출할 증거를 상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시작하기전 이런 회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공청회 담당자 (IHO)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공청회 시작전의 회의에서 증인들의 목록을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모임은 공청회 시작전에 전화로 할 수 있거나, 공청회에서는 서두 발언 전에 할 수 있다.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공청회 사무실에 미리 이런 회의를 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으나, 공청회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회의가 열릴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준다.

보통 공청회는 다음 장소에서 개최한다:

NYC DOE Impartial Hearing Office
131 Livingston Street
Brooklyn, NY 11201

만일 특수한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부모가 오픈된 공간에서 공청회를 갖고 싶지 않을 경우)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국 (DOE)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편리하다는 시간에 공청회를 시작할 수 있다.

공청회실

공청회는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재판장이 아닌—탁자에서. 교육국 (DOE) 담당자 (때때로 교육국에서 나온 변호사)가 탁자 한쪽에 앉고, 학생가족이나 대표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역관이 다른 편에 앉는다. 공청회 담당자 (IHO)는 탁자 끝에 앉고 속기록사 (그리고 속 기록하는 기계)는 다른 반대 편에 앉는다. 공청회는 재판처럼 진행되고 각 상대방이 증거물들을 번갈아 제시하면서 공청회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 진행 절차는 속기록사에 의해 기록되며 정확하게 모니터링 된다. 공청회에서 다뤄진 모든 진술들은 기록되어 공청회가 끝난후 며칠후 각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

공청회

공청회 사무실에서는 담당 역할을 설명하고 공청회가 진행중 법률적으로 주어진 권한들을 설명하면서 공청회를 시작한다. 본인이나 교육국 (DOE)에게 서두 발언을 통해 소송 사건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설명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읽어볼 수 가 있다. 서두 발언에서는 간략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런 입장에서 발생하는 논쟁거리를 요약하여 골자를 말해 준다.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 했음에도 교육국 (DOE)에서 먼저 사건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각 상대방은 증거 (서류 나 증인)를 제시하면서 공청회 담당자 (IHO)를 설득하여 해결해 주도록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각 상대방이 제시한 증인들의 진술이 끝난후 다른 한편에게 그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증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참석해 달라고 부탁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국 (DOE)의 증인들은 전화로 진술을 한다.

➤ 얼마의 기간 동안에 사건을 해결해야 하나?

뉴욕 규정상, 공청회 담당자 (IHO)가 추가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단지 하루 동안 사건을 제출 할 수 있다. 많은 공청회들이 하루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증거에 대한 부담감이란?

증거에 대한 부담감이란 그런 것을 증빙하기 위한 책임을 말한다. 공청회에서는 단지 한쪽 상대방만이 증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일 어느 상대방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는 경우 공청회에서 승소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자기 아이에 대해 학교에서 구분하고 분류해 놓은 것을 변경해 달라고 부모가 교육국 (DOE)에 고소한 경우, 교육국에서는 그렇게 분류한 것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제시 하여야만 한다. 만일 교육국 (DOE)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없다면, 교육국에서는 승소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만일 학부모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다면, 승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아이에 대해 학교에서 분류해 놓은 것을 변경 할 수 있다.

교육국 (DOE)에서는 증거에 대한 부담감이 보통 많으며, 이는 교육국 (DOE)에서 먼저 사건 내용에 대해 설명하게 만든다. 만일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지불한 수업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때는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사립학교에 관한 소송건에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면, 교육국에서 수업료를 부담하며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여라.

➤ **공청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

본인이 바라는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 공청회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경우,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모의 견해는 중요하나,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본인이 바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불 충분하다. 제시하는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증언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서류 증거물은 학생에게 알맞는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 (IEPs), 학교 평가, 개인 평가, 서신, 발달 기록, 사진, 비디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서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자나, 정신 건강 담당자 나 의료진에 의해 작성된 것도 포함된다. 추가로, 전문가, 실험자, 상담자, 가족 구성원 혹은 학생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의 증언을 제출할 수도 있다.

➤ **교육국 (DOE)으로 받은 서류나 증인을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도움을 받기위해 사용 할 수 있나?**

교육국 (DOE)으로 부터 기록을 받기 원하며, 그리고/혹은 교육국 직원이 증인으로서 증언해 주길 바란다면, 소환장 양식을 작성하여 그것을 공청회 사무실 (IHO)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공청회 사무실에서 서명을 받기 위해 소환장을 팩스나 이메일로 공청회 사무실에 보낼 수 있다. 사무실에서는 교육국 (DOE)에 관한 소환장만 다룬다. 본인이 필요한 증인 (교육국 직원이 아닌)을 소환하는데 소환장이 보통 필요 하지는 않으나, 증인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사무실에 서명해 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 **공청회에서 기록한 것을 본인에게도 제공해 주나?**

그렇다, 공청회는 공식적 절차이므로 기록을 한다. 그 모든 절차에 관한 기록들은 공청회가 끝난후 본인과 교육국 (DOE)에 보내준다. 그 기록은 공식적인 진행 절차를 전부 기록한 것이다. 공청회 동안, 그러나, 공청회 담당자 (IHO)는 몇가지 토론 내용을 “기록하지 말 것”을 주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것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 서로간의 대화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간주 하지 않으며 항소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공청회 기간 동안 공청회 담당자의 역할은?**

공청회 담당자 (IHO)는, 증언을 듣고, 증거에 귀 기울이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 심사하는 사람이다. 담당자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거나 공청회 기간중 발생하는 논쟁과 문제점들을 해결 해 준다.

➤ **공청회 담당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나?**

담당자는 소환장을 발행하고 선서를 시키며 공청회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일 공청회 담당자는 제출한 증거나 증인이 “적절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거나 혹은 부당하게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것들은 제한 하거나 제지 할 수가 있다. 공청회 담당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 **공청회에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설명서: 3살—21살 사이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권리에서 설명한 것 처럼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공청회를 요구하고 참석하기 전에 공청회의 권리에 대한 설명서를 잘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 **통역사가 필요하다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그 장소에 도착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구할 수 있나?**

공청회 사무실에서 보내온 양식 서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역사가 필요하다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공청회 장소에 도착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양식을 사용하여 요구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런 도움을 받는데 있어서 따로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다.

➤ **학생도 공청회에 꼭 참석 하여야 하나?**

본인 생각에 참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아이도 공청회에 출석하여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청회 사무실에서 보내온 여러 서류들 중 학생의 출석 여부에 관한 통보서도 포함되어 있다.

공청회 이후

모든 기록을 정리한 후 몇주 후에 서면으로 내린 결정을 공청회 사무실에서 보내준다. 공청회 사무실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후 45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공청회를 기다리거나 공청회에서 내린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은 어느 학교에 다녀야 하나?

연방 법에 따라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데, 이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교육적인 그 위치에 그대로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가 “미 결정”이며 소송 절차를 접수하여 진행하면서 항소 기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발생된다. 미 결정 사항에 관한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아라.

만일 학생이 현재 배치된 곳에서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면 공청회가 끝나기 전 까지 다른 곳으로 배치하여 아이를 옮기 수 있다고 본인과 교육국 (DOE)이 서로 동의할 수도 있다. 만일 교육적인 문제로 정학을 당하고,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입학 신청한 것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라면, 본인의 동의 아래 아이를 공청회의 모든 과정이 끝날 때 까지 아이에게 적합한 공립학교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재 배치 할 수 있다. 만일 유아 학생이 현재 특수 교육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아이는 공청회 기간 혹은 항소 기간 중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만일 공청회 담당자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만일 공청회 담당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주 교육국에 있는 소송 사건을 재 검토하는 담당자 (SRO)에게 항소할 수 있다. 이런 항소를 신청할 경우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할 경우,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설명서: 3살-21살 사이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권리*에서 설명한 것과, 주 교육국에 있는 소송 사건을 재 검토하는 담당자 (SRO)에게 어떻게 항소할 수있나에 대한 설명서를 잘 검토하여야. 또한 웹사이트 <http://www.sro.nysed.gov> 를 참조하여야.

공청회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설명서: 3살-21살 사이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권리*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다음 웹사이트에 설명되어있다:

[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policy/psgncover.htm#notice](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policy/psgncover.htm#notice)

그리고 주 내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 (718) 722-4544로 전화 걸 수 있다.

교육국 (DOE)과 뉴욕 주 교육국내 특수 교육국에 (518) 473-2878로 전화 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vesid.nysed.gov/specialed/> 에서 필요한 양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

참 조

- 기록을 하여 보관할 것
 - 모든 전화 내용과 개별적으로 만난 회의나 모임의 내용을 기록
 - 서류에 날짜가 적혀있지 않으면, 모든 서류나 봉투의 뒷면에 받은 날짜를 적어 놓을 것
- 동기우편이나 직접 전달하여 모든 서신을 보내고, 전달 받은 사람에게 복사본에 서명과 날짜를 적어 달라고 부탁할 것
- 항상
 - 교육국에 보낸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할 것
 - 관련된 교육국 담당자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
 - 가능하면, 직위, 사무실 그리고 자세한 연락 사항들
 - 미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적어 놓을 것

일반적인 성격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설명서를 어떤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

2011년 1월

<input type="checkbox"/> 공청회를 요:	Translated by Asian/American Center of Queens College with Funds Provided by Queens Borough President Helen Marshall (No alterations on this document are permitted).
<input type="checkbox"/> 공청회를 요: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한 요구

*학생 이름 _____ 뉴욕시 학생 I.D. (OSIS) _____

*학생 주소 _____ 시/주 _____ 우편번호 _____

학생의 생년월일: ____/____/____ 학생이 다니는 학교: 공립학교 차터스쿨 사립학교 학군 # _____

만일 학생이 교도소에 있거나 위탁 아동 시설에 있어 거주지가 없는 경우 이곳에 표시할 것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 _____

학교 주소 _____ 우편번호 _____

학생 개개인에 알맞는 교육 프로그램 (IEP)을 시작한 날짜: ____/____/____ 학군에서 주관하는 IEP #: _____

학부모나 보호자의 연락 사항

학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이름: _____

주소 (만일 학생의 주소와 다를 경우) _____

시,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이 주소가 학생의 학교에 기록된 것과 다를 경우 학교에 가서 주소를 정정할 것. 이 요구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의 기록이 변경 되지는 않는다).

이메일 주소: _____ 만일 공청회 날짜를 이메일로 받고 싶다면 이 곳에 표시 할 것

전화번호: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전화를 한다. 원하는 연락처에 표시를 할 것.]

집: (____) _____ 휴대 전화: (____) _____

직장: (____) _____ 기타: (____) _____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영어 기타 (자세히 적을 것) _____

공청회를 신청하는데 번역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언어: _____

공청회를 진행하는 동안 수화사가 필요한 경우

설명한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하고 싶은 해결 방법

*문제점들을 설명할 것 (본인과 학군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적인 것을 자세히 적을 것).
만일 더 많은 빈칸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종이에 적어 첨부하라.

*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하고 싶은 해결 방법: _____

_____ 이 양식을 작성한 사람의 서명 _____ 날짜 _____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법적인 보호자 변호사 기타 (자세히): _____

중요: 만일 위의 질문에 변호사나 기타에 표시했다면 아래에 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입할 것. 만일 변호사가 미리 참석한다는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분 증명서에 서명하지 않고, 뉴욕시 교육국 직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학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에 의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 대해 학생과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만 유일하게 논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기타 및 변호사의 연락처 내용

이름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주소 _____ 우편 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이 통지문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은 비밀이 보장된다.

개정: 11/5/10